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년 7월 31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한재인 (인) 외

33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1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한재인 외 33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5회 정기회의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p> <p>제19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p> <p>본 법안은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수위의 처벌을 내리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겐 적절한 수위의 처벌과 피해자에겐 확실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나 성폭력은 피해자가 더욱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범죄인만큼, 더욱 중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 <p>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p>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p>	

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 개 의 원

한재인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통계청에서 제시한 연령별 성폭력 피해율을 보면, 현재 고등학교 및 그 이하 학교에서는 10명 중 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했고,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건수가 3배로 증가했을 정도로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고등학교 및 그 이하 학교들의 운영법에는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이 학교 폭력의 일부로 간주되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하여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 만 14세 이상의 학생들 중 심각한 수준(강간 등)의 성폭력은 중범죄로 간주되어 실제 법정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성폭력은 처벌의 수위가 미비한 상태이다. 학교 내 다수의 성폭력 사례들은 학교폭력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을 최소화하고, 사건 또한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의 미비한 대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의 예로,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여고생의 사진을 알몸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구한 남자 고등학생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처벌로 사회봉사 5일과 특별교육 3일로 그친 사례가 있다. 이는 가해자 학생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상상을 하는 용도로 요구한 것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한 처벌이라고 학교 측은 얘기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큰 상처를 받은 후였고, 결국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가 사건의 크기를 줄이려는 대응을 막기 위하여 본 청소년 국회의원들은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가해자도 합의를 하지 않은 가해자의 처벌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해 받은 학생들 또한 더 체계적인 학교의 대응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에서는 교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골자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3항을 신설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⑬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교칙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이 때, 교칙은 위의 17조 1항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3. 신규문 대조표

현행	신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떠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교칙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이 때, 교칙은 위의 17조 1항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